

# 한·미 FTA 체결과 경기도의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era-US FTA and Export Competitiveness in Gyeonggi  
Province

이재화(Jae-Hwa Lee)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지자)

송정석(Jeong-Seok Song)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목 차

- |                   |                   |
|-------------------|-------------------|
| I. 서 론            | V.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
| II. 경기도의 수출입현황    | VI. 결 론           |
| III. 경기도의 수출경쟁력분석 | 참고문헌              |
| IV. 한미FTA와 경기도 수출 | Abstract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Gyeonggi-Do and the effect of Korea-US FTA on its export competitivenes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rade structure and implementing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of export commodities of Gyeonggi-Do, the investigation has listed the specific export commodities with competitiveness for increasing the volume of its expor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short, mid and long run perspectives. From the findings in this study, it suggests specific trade and commercial policies to Korea-US FTA including implementing commodity-oriented export supporting system, strategic marketing method, economic-free-zone plan, R&D investment, export financing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 Korea-US FTA, Export Competitiveness, RCA, TSI

## I. 서론

2007년 4월에 본 협상이 타결되고 6월에 추가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는 상품·투자·서비스·경쟁·지적재산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이며, 우리나라로서는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협정체결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거시경제적으로, 한미 FTA는 교역증진, 소득증대와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통하여 우리경제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산업별 영향은 각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구조에 따라 그 기대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한미양국은 전품목에 대해 상품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시장인 미국시장에서 주력품목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출가 증대 예상되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산업내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생산 및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가 국내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한 생산 및 고용의 증대효과이며,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증대 및 기술 혁신 효과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농수산업은 관세가 조기에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러한 한미 FTA의 영향은 국가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지자체별 수준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단기적으로 수출증가는 지자체내의 산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시켜 지자체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증대 및 기술 혁신을 통하여 지자체의 산업구조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있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한미 FTA체결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을 통한 경기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수출산업의 품목별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평가하여, 한미 FTA시대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수출진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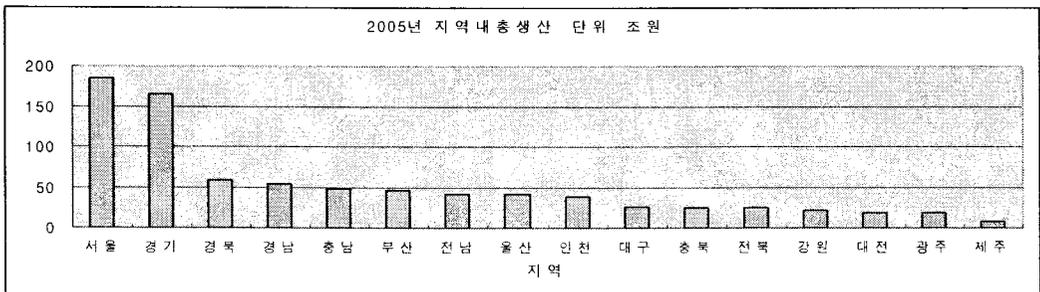
한·미 FTA와 관련된 연구는 거시경제적 또는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박순찬 외, 2005; 이홍식 외, 2006; 정인교, 2006; 산업연구원,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등), 지자체의 입장에서 분석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입장에서 분석된 연구는 최근의 박순찬(2006)의 연구에 불과하며, 이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주제도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FTA관련 연구들은 협정체결이전 FTA체결이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의 예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FTA체결이후 협정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산업별, 상품별 영향을 지자체입장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협상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경기도 주요수출품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품목의 대미, 대세계 수출경쟁력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수출경쟁력지수를 이용하여, 품목별 한·미 FTA체

결내용을 기준으로 수출증대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체결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수출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경기도의 전반적 수출현황을 살펴보았으며, III장에서는 한·미 FTA의 일반적 개황과 개별품목별 타결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타결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주요수출품목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제VI장에서는 경기도의 주요수출품목의 대미, 대세계 수출경쟁력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미 FTA에 따른 경기도의 수출증대 유망품목을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이러한 수출증대유망품목의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구체적인 수출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VI장은 결론으로 본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II. 경기도의 수출입현황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인구 4,814만 명중 경기도인구는 1,061만 명으로 서울인구규모를 앞질러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이며, 경제활동인구도 전국의 22.1%인 525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산업생산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은 2005년 당해년 가격기준으로 163조 9827억원으로 서울의 185조 912억 원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여, 경기도는 서울을 제외하고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자체이다. 즉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은 우리나라 총생산의 20.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산업생산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총생산 증가율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연평균 7.28%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어 국민경제에서 경기도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에 있어서 경제활동별 산업구조를 광공업(제조업포함),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2005년 기준으로 경기도 산업의 중심은 서비스업(47.5%)과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38.4%)으로 전체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그림 1] 지역내총생산 구성

다음으로 경기도의 대외거래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수출입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고, 2004년에는 무역수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2006년에는 8억13백만 달러 하락한 34억 1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수출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6년에는 6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수출국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홍콩, 대만, 일본 순이며, <표 2>와 같이 경기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수출구조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현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경기도의 주요수출국을 유지해왔으나, 2004년 이후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비중 증대로 2004년부터 중국이 경기도의 제1수출국으로 부상하였고, 2006년 기준 전체 경기도 수출액 중 중국의 비중이 28%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비중이 경기도 수출에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1의 수출국 위치를 중국에 내주었으나, 대미국 수출시장은 2006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수출의 17%로 경기도의 제2의 수출국위치를 유지해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교역상대국을 살펴보면, 주요수출국 상위 10개국 이 경기도 전체 수출의 약 72%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교역상대국 현황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중국, 홍콩, 대만이 주요수출국에 포함되어 중국권역으로의 수출규모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과 같이 경기도의 국가별 수입에 있어서 최대수입국은 2000년, 2001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았으나, 2002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순위가 바뀌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다. 2005년부터는 그동안 주요수입국 3위를 유지해 오던 중국이 2위로 부상하고, 미국은 우리나라 주요수입국 중 중국에 이어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경기도의 수출입규모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액	증가율	총수출에서 경기도수출비중	수입액	증가율	총수입에서 경기도수입비중	무역수지
2000	38,041	-	22%	35,640	-	22%	2,401
2001	29,946	-21.3	20%	27,579	-22.6	20%	2,367
2002	31,965	6.7	20%	29,289	6.2	19%	2,676
2003	36,228	13.3	19%	33,983	16	19%	2,244
2004	46,466	28.3	18%	42,121	23.9	19%	4,345
2005	55,671	19.8	20%	51,440	22.1	20%	4,231
2006	63,217	13.6	20%	59,798	16.2	19%	3,4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2〉 경기도 지역의 상위 20개 수출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중국	3,498	3,365	5,344	7,293	10,398	14,583
2	미국	10,784	8,496	7,818	7,739	9,585	9,874
3	홍콩	2,380	2,076	2,515	3,247	3,257	3,148
4	대만	1,886	1,145	1,223	1,294	2,481	2,713
5	일본	3,358	2,412	2,148	2,211	2,642	2,671
6	싱가포르	1,332	676	562	786	1,142	1,514
7	독일	1,017	832	815	911	1,181	1,384
8	멕시코	500	415	428	389	491	879
9	영국	1,289	853	799	822	1,055	1,326
10	말레이시아	1,263	775	857	1,035	961	1,144
11	이탈리아	336	261	290	429	710	1,658
12	필리핀	1,138	615	807	722	748	1,001
13	인디아 인도	176	204	218	284	527	736
14	러시아 연방	176	202	138	239	325	689
15	스페인	290	279	277	422	745	868
16	브라질	349	371	260	236	451	659
17	캐나다	508	513	596	690	746	710
18	호주	710	625	615	512	573	797
19	프랑스	418	275	232	289	434	691
20	인도네시아	826	582	717	702	644	622
총계		38,041	29,946	31,965	36,228	46,466	55,67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또한 경기도의 수출현황을 수출상품 품목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2006년 대세계 수출품목은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의 기계류 및 부분품,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순으로 대부분 전기전자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주요수출품목이 구성되어있다. 특히 이러한 경기도의 대세계 수출품목의 구성은 경기도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며, 특히 전기 및 전자 산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주요수출품목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주요수출품목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는 수출이 주요 5대 수출주력품목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경기도의 대세계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및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의 기계류 및 부분품등에 집중되어있어 다소 상이한 다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1) 경기도 산업별 구성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총 산출액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며, 경기도 전체 제조업 산출액 중 전기 및 전자제품의 비중은 35%에 달함 (2004년 기준).

2) 5대 주요수출품목: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조선.

〈표 3〉 경기도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현황: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4,209	10,176	11,577	14,145	18,902	26,192	26,945
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907	3,936	4,224	5,916	9,635	10,421	11,245
3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10,924	7,967	8,460	8,107	8,174	8,071	10,219
4	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669	609	532	695	1,092	1,639	3,765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090	983	868	1,049	1,329	1,605	1,813
6	74	동과 그 제품	420	312	358	416	730	736	1,352
7	72	철강	291	197	267	280	425	508	617
8	73	철강의 제품	346	293	287	332	450	542	562
9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427	369	435	445	405	431	453
10	41	원피와 가죽	574	539	496	479	457	403	4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의 대미 수출규모도 경기도 전체 수출규모 변화 추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6년에는 대미 총수출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전체 경기도 총수출규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기준의 대미 주요수출품목의 구성이 우리나라 전체의 대세계 주요수출품목 구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의 2006년 대미 수출품목도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경기도의 대세계 수출품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와 경기도의 대세계 최대수출품목인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이 경기도의 대미 최대수출품목을 차지하여 왔으나, 2002년 이후부터,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이 경기도의 대미 최대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한미FTA체결과 함께 최대수출품목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의 기계류 및 부분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순으로 경기도의 대세계 수출주요품목과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4〉 경기도의 대미 품목별 수출현황: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856	2,358	2,481	2,849	4,024	3,362	4,158
2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3,774	2,628	2,230	2,367	3,034	3,868	3,466
3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3,850	2,370	1,974	1,340	1,161	1,132	1,293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3	104	137	168	195	251	285
5	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185	153	87	103	104	175	282
6	73	철강의 제품	117	104	91	97	122	137	117
7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33	30	61	61	71	67	90
8	74	동과 그 제품	42	19	19	17	35	38	82
9	48	지와 판지,제지용펄프,지와 판지제품	39	31	47	56	56	55	62
10	49	인쇄서적,신문,회화,기타인쇄물,수제문서,타이프문서,도면	30	37	42	45	53	57	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Ⅲ. 경기도의 수출경쟁력분석

한 국가나 지역의 대세계 또는 특정국가에서의 수출경쟁력을 파악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특정제품이나 부문의 무역수지 혹은 특정시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즉, 국가의 수출경쟁력이 무역을 통하여 실현될 때 해당품목 또는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거나 또는 무역상대국보다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수출경쟁력지수로는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와 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지수) 또는 경쟁력지수 (Competitiveness Index: CI지수)가 대표적이다. RCA지수는

특정국의 세계시장점유율에서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이 차지하는 비중<sup>3)</sup>을 구하여 지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RCA지수 값이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특정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 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무역특화지수는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수출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각 품목의 순수출을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sup>4)</sup>으로 그 값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는 해당상품이 무역흑자가 되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그 값이 -1에서 0 사이이면 수입에 특화된 경우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지수 중에서 대세계, 대미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경기도 전체와 각 지역별 수출품목의 대세계, 대미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한미FTA 체결 시 경기도의 수출증대 품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와 대미 무역특화지수가 동시에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품목의 경우, 향후 미국이 여타의 교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대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특화지수와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동시에 높은 품목일 경우에는, 미국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해당품목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미 무역특화지수만 높은 품목일 경우는, 미국이 여타 교역상대국과 FTA에 체결시, 미국시장에서 여타국가에 해당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빼앗길 수 가능성 상존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1. 경기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sup>5)</sup>

위에서 설명된 경기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대세계 수출품목의 경우 99개 품목 중 28개 품목은 (+)를 나타내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고, 특히 이중 9개 품목의 경우는 무역특화지수가 0.5이상으로 높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1에서 0.5사이 품목은 HS 2단위 기준으로 HS코드 24(담배류 및 부산물), 56(방직섬유위딩 및 펠트), 58(특수직물), 59(침투·도포직물), 60(편물), 65(모자), 87(자동차 및 그 부분품·부속품), 92(악기 및 그 부분품·부속품), 97(예술품·골동

$$3) RCA_{ik} = \frac{(X_{ik}/TX_k)/(X_i/TX)}{(X_{ik}/X_i)/(TX_k/TX)}$$

$X_{ik}$ : i국의 k상품의 대세계 수출액,  $TX_k$ : 세계 전체의 k상품 수출액

$X_i$ : i국의 총수출액,  $TX$ : 세계전체의 총수출액

$$4) TSI = \frac{X_{ij} - M_{ij}}{X_{ij} + M_{ij}}$$

$X_{ij}$ : 일정기간 동안 i국의 j상품에 대한 총 수출,  $M_{ij}$ : 일정기간 동안 i국의 j상품에 대한 총 수입

5) 2000년-2006년 경기도의 품목별 대세계 및 대미 무역특화지수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품)등이다. 그리고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0.5에서 0사이의 품목 (HS 2단위 기준)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HS코드 19(곡물곡분의 조제품), 33(향수·화장품), 39(플라스틱류), 41(원피), 48(종이와 종이제품), 49(인쇄서적·신문·회화), 50(견직류), 54(인조장섬유), 55(인조단섬유), 57(양탄자류), 61(편물제의류), 63(기타방직용섬유제품), 73(철강제품), 79(아연), 82(비금속제공구), 83(비금속제각종제품), 84(기계류 및 그부분품), 85(전기기기외 그부분품), 91(시계), 98(농업·건설·전기·가스서비스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0이하 품목으로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HS 2단위 기준으로 HS코드 01(산동물류)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70개 품목이 포함된다. 위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표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경기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기준으로 최상위의 수출경쟁력을 보여주는 품목은 9개 품목이며, 차 상위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품목은 20개 품목이며, 나머지 70개 품목은 수출경쟁력이 없는 하위 품목으로 분류된다.

<표 5> 경기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분류

(단위: 개수)

구분	최상위	상위	하위
TSI	0.5 < TSI < 1	0 < TSI < 1	0 < TSI
품목수	9	20	70

## 2. 경기도 대미 무역특화지수

앞 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경기도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경기도 대미 무역특화지수를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해 보면,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대미 수출품목의 경우 99개 품목중 41개는 (+)로 나타나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고, 특히 이 품목의 과반수이상인 25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는 0.5이상으로 대미국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 절에서 설명된 대세계 수출경쟁력으로 평가된 수출품목의 수보다 많이 나타나며, 이는 경기도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대미국시장에서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미국 무역특화지수가 1에서 0.5사이 품목은 HS 코드 09(커피·향신료), 11(밀가루전분), 24(담배), 46(조물재료의 제품), 49(인쇄서적·신문·회화), 50(견류), 51(양모), 53(기타식물성 방직용 섬유), 54(인조장섬유), 57(양탄자류), 58(특수직물), 59(침투·도포직물), 60(편물), 61(편물제의류), 62(비편물제의류), 63(기타방직용섬유제품), 65(모자), 66(우산·지팡이), 67(조제우모·조화·인모제품), 73(철강제품), 62(비편물제의류), 86(철도차량), 87(자동차), 92(악기), 96(잡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대미국 무역특화지수가 0.5에서 0사이 품목은 HS 코드 06(수목 및 절화), 19(곡물곡분의조제품), 21(조제식품),

42(가죽), 56(방직섬유위딩 및 펠트), 64(신발), 68(석·시멘트제품), 72(철강), 76(알루미늄), 79(아연), 80(주석), 83(비금속계의 각종제품), 91(시계), 94(가구·조명기구·조립식건축물), 95(완구·운동용구), 97(예술품·골동품)등이다. 또한 대미국 무역특화지수가 0이하 품목으로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HS 2단위 기준으로 HS 코드 01(산동물류)등 58개 품목으로 구분된다.

종합적으로 경기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와 비교하여 대미 무역특화지수경우에 높은 경쟁력을 지닌 품목이 두 배 가까이 많아 이는 경기도 지역의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전세계 시장에서 보다 미국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대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경기도지역의 대미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미국시장에서 약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표 6〉 경기도 대미 무역특화지수 분류

(단위: 개수)

구분	최상위	상위	하위
TSI	0.5 < TSI < 1	0 < TSI < 0.5	0 < TSI
품목수	25	16	58

## IV. 한미FTA와 경기도 수출

한미FTA는 2007년 4월 공식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동년 6월 미국의 신통상정책 관련 추가 협상도 타결되었다.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는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로써 그 내용과 포괄범위가 방대하나 이장에서는 그 내용의 범위를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분야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약술하고, 수출산업관련 세부 양허안의 기본내용을 살펴본다.

### 1. 한미FTA 최종양허안 내용요약

#### 1) 협정의 기본 내용

기본적으로 한미FTA는 상대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공산품/임·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한다. 즉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한미 FTA에서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세의 부과를 금지하고, 수입허

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하여 신규수입허가를 도입할 경우, 신규허가절차 발효 전에 정부기관지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한미FTA를 통한 원활한 상품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양국간 협의채널로서 상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있다.

2) 주요 타결 내용

한미FTA에서 상품분야 주요타결내용은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100%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에 대하여 3년 이내 조기 철폐에 합의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의 경우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며,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 철폐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대미 수출 잠재력이 큰 픽업트럭은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측의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Tariff Rate Quota) 등을 도입하고,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0불 이상 대미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0.21%)의 철폐에 합의하여, 이러한 조치로 연간 4,700만불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한미 FTA 특위보고서).

3) 수출산업관련 세부 양허인6)

한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하여,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의 대미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하여, 특히 미국 시장내에서 우리나라의 주요수출 경쟁국 중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채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구체적인 상품분야 양허결과와 양허단계별 주요품목은 <표 7>과 <표8>에 요약되었다. 특히 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주요 경쟁국)은 승용차(일본), LCD모니터(중국, 일본), 캠코더(일본), TV카메라(일본), 오디오앰프(중국), 폴리스티렌(멕시코), 금속절삭가공기계(일본), 이어폰(중국), 예폭시수지(캐나다), 칼라TV(멕시코) 등으로 요약된다.

<표 7> 양국 상품분과 양허결과

(단위: 억달러)

	우리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7,218	85.6%	200.0	80.6%	6,176	87.0%	331.0	87.2%
3년관등	719	8.5%	33.2	13.4%	360	5.1%	28.2	7.4%

6)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결과' (2007.4.)를 참조하여 요약함.

5년균등		168	2.0%	3.8	1.5%	196	2.8%	8.7	2.3%
10년	균등	301	3.6%	10.7	4.3%	333	4.7%	11.5	3.0%
	비선형	24*	0.3%	0.3	0.0%	12	0.2%	0.1	0.0%
12년	비선형	1	0.0%	-	0.0%	17	0.2%	0.02	0.0%
	TRQ	2	0.0%	0.03	0.0%				
15년(TRQ)		1	0.0%	0.04	0.0%				
총계		8,434	100%	248.4	100%	7,094	100%	379.6	100%

출처: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결과', 2007.4.

<표 8>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 관세율%

	한국측	미국측
즉시	승용차(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 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등	DTV(5), 3,000cc 이상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상들리에(3.9) 등
5년	톨루엔(5),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6.5),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페놀(5.5),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등	특수 신발

출처: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결과', 2007.4.

## 2. 한미 FTA와 경기도 수출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된 경기도의 대미 주요 수출현황과 대세계 및 대미 무역경쟁력 지수자료를 바탕으로, <표8>의 한미FTA양허안분석의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을 비교하여 한미FTA에 체결에 따른 각 지역별 수출증대 가능 품목을 산출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표8>에 표시된 미국측 양허단계별 주요품목을 단기(즉시철폐), 중기(3년과 5년 철폐 품목), 장기(10년이상 철폐 품목)로 구분하여 세부 품목을 산출하여 <표9>와 같이 표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표9>를 이용하여 세가지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수출증대 가능 예상 품목을 산출하였다. 세가지 기준은 제3장에서 분석된 경기도의 주요수출상위 품목, 대미 무역특화지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였다.

우선 첫째로 <표9>에서 한미FTA 양허안에서 미국 양허단계별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과 경기도의 주요수출품목 중에서 상위그룹에 포함된 품목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품목을 정하여 한미FTA 체결로 인해 단기, 중기, 장기 시기별로 수출증대가 가능한 품목을 결정한다. 둘째로 <표9>에서 한미FTA 양허안에서 미국 양허단계별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과 경기도의 대미 경쟁력지수의 최상위에 포함된 품목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품목을 정하여 한미FTA 체결로 인해 단기, 중기, 장기 시기별로 수출증대가 가능한 품목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대세계 및 대미 경쟁력지수가 동시에 최상위를 나타내는 품목 중에서 한미FTA 양허안에서 미국 양허단계별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과 공통으로 포함되는 품목을 산출하여 한미FTA에 따른 경기도의 수출증대 가능 품목 결정한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대세계 경쟁력지수와 대미 경쟁력지수가 동시에 최상위인 품목의 경우는, 향후 미국이 여타의 교역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출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한미FTA 미국양허단계별 주요품목

구분	품목(HS 코드)
단기*	-광물성 생산품 : 25류,26류 광물, 27류 연료/에너지 -화학공업생산품 : 28류 무기화학품,29류 유기화학품, 30류 의약품/의료용품, 33류 화장품, 35류 단백질, 36류 화약/성냥, 37류 사진재료, 38류 화학공업생산품, - 플라스틱과 고무 : 39류 플라스틱, 40류 고무 - 원피,가죽,모피: 41류 원피, 42류 가죽, 43류 모피, - 목재와 그 제품 : 44류 원목/목재, 47류 펄프, 48류 지 -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50류 ~ 63류 - 7019호 유리와 유리제품 - 비금속과 그 제품 : 71류 귀금속, 73류 철강제품, 75류 니켈, 76류 알루미늄, 78류 연, 81류 비금속, 82류 비금속제 공구/제품 - 기계류와 전기기기 : 84류 기계류, 85류 전기기기 - 수송기기 : 87류 자동차 - 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 91류 시계 - 9404호 잡품
중기**	- 자동차(87류: 87032400 등) - 텔레비전 관련 장치 (85류: 85299001, 85299009, 85299013,85299029, 85299039, 85299043 등 ) - 레이더, 무선기기 등 (85류: 85299016, 85299019, 85299073 등) - 전자 발광램프 (85류: 85438970) - 펄프용품(95류: 95063900) - 고밀도에틸렌(39류: 39012010) - 은(71류: 71069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리콘수지(39류: 39100000)</li> <li>- 콘택트렌즈(90류: 90013000)</li> <li>- 금속절삭가공기계(84류: 84589950)</li> <li>- 기타승용차(87류: 87032400 등)</li> <li>- 골프채(95류: 95063100)</li> <li>- 드릴공구(84류: 84592900)</li> <li>- 타이어(40류: 40061000 등)</li> <li>- 알루미늄호일(76류: 76071130)</li> <li>- 접착제(35류: 35069900)</li> <li>- 가죽의류(42류: 42031040)</li> <li>- 폴리에테르(39류: 39072000)</li> <li>- 안전유리(70류: 70072900)</li> <li>- 자전거(87류: 87120015 등)</li> <li>- 조립식 건축물(94류: 94060040, 94060080)</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장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5류: 85165000)</li> <li>- 세탁기(84류: 84501100)</li> <li>- 폴리에스테르수지(39류: 39079900 등)</li> <li>- 베어링(84류: 84821050, 84822000, 84824000 등)</li> <li>- 가정용 접시세척기(84류: 84221100)</li> <li>- 기타안료(32류: 32041704)</li> <li>- 세탁기와 그 부분품 (84류: 84512100, 84509020, 84509060)</li> <li>- 전기믹서기(85류: 85094000)</li> <li>- 손전등(85류: 85131020)</li> <li>- 모조장신구(71류: 71162040 등)</li> <li>- 유리제품 (70류: 70131050, 70132110, 70132120, 70132905, 70132930, 70132950 등)</li> <li>- 화물자동차(87류: 87042100 등)</li> <li>- 구체 조명 및 램프 등(94류: 94059110, 94059130)</li> </ul>

주) \*: 단기=즉시철폐, \*\*: 중기=3년, 5년 철폐 품목, \*\*\*: 장기= 10년이상 철폐품목

### 1) 주요수출품목 기준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주요 수출품목중에서 상위 1위에서 10위사이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한미FTA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기준표와 비교하여 공통으로 포함되는 수출증대가능품목을 단기, 중기, 장기별로 예상하여 <표 10>에 요약하였다. 대미국 시장의 수출품목 중 규모에 있어 1~10위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수출증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의 즉시철폐로 단기에 대미 수출의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에는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85), 원자로·보일러의 기계류(84),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87) 등 8개 품목으로 산정할 수 있다. 3년과 5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어 중기에 대미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HS 코드 87류 중 자동차류(87032400)이다. 그리고 10년 이상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장기에 대미 수출증

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HS 코드 37류 중 화물자동차(87042100)를 들 수 있다.

<표 10> 경기도 전체 수출증대가능 품목: 주요수출품목 1~10위 기준

시기구분	품목 코드
단기	39, 41, 60, 73, 84, 85, 87, 90
중기	87(87류: 87032400 등)
장기	87(87류: 87042100 등)

주) 코드별 품목명은 <표9>의 HS코드 참조

## 2) 대미수출경쟁력지수 기준

2006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경기도의 대미무역특화지수가 0.5이상인 품목을 선정하여 <표 9>의 한미 FTA 양허단계별 주요품목기준표와 비교하여 공통으로 포함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증대가능품목을 단기, 중기, 장기별로 예상해 보면 <표 11>에 요약된 것과 같이 나타난다. 대미무역특화지수가 0.5이상인 품목은 대미국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최상위 속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관세의 즉시철폐로 단기에 대미 수출의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에는 비금속제의 공구(82),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87) 등 14개 품목으로 산정할 수 있다. 3년과 5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어 중기에 대미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HS 코드 87류 중 자동차류(87032400)이다. 그리고 10년이상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장기에 대미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HS 코드 37류 중 화물자동차(87042100)를 들 수 있다. 중기와 장기에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1)절에서 주요수출품목 기준으로 산정된 품목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11> 경기도 전체 수출증대가능 품목: 대미수출경쟁력지수 0.5이상

시기구분	품목 코드
단기	50, 51, 53, 54, 57, 58, 59, 60, 61, 62, 63, 73, 82, 87
중기	87(87류: 87032400 등)
장기	87(87류: 87042100 등)

주) 코드별 품목명은 <표9>의 HS코드 참조

### 3) 대미 및 대세계 수출경쟁력지수 기준

2006년 기준 경기도의 대미 및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0.5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표 9>의 한미FTA 양허단계별 주요품목기준표와 비교하여 공통으로 포함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증대가능품을 단기, 중기, 장기별로 예상해 보면 <표 12>에 요약된 것과 같이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미 및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동시에 0.5이상인 품목의 경우, 향후 미국이 여타의 교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대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기에는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60),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87) 등 4개 품목이 수출의 증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3년과 5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어 중기에 대미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HS 코드 87류 중 자동차류(87032400)이다. 그리고 10년 이상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장기에 대미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HS 코드 37류 중 화물자동차(87042100)를 들 수 있다. 중기와 장기에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앞의 (1)절 과 (2)절에서 주요수출품목과 대미수출경쟁력지수 기준으로 산정된 품목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12> 경기도 전체 수출증대가능 품목: 대미 및 대세계 경쟁력 0.5이상

시기구분	품목 코드
단기	58, 59, 60, 87
중기	87(87류: 87032400 등)
장기	87(87류: 87042100 등)

주) 코드별 품목명은 <표9>의 HS코드 참조

## V.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앞장에서는 한미FTA체결이 경기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하여 한미FTA에 따른 경기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이용하여 한미 FTA에 체결에 따른 경기도의 수출증대가능 품목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선정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세부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품목중심의 수출지원체제 구축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경기도의 대미국 수출현황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대미 수출주요 품목과 향후 수출유망 우선 품목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본 연구의 주목적과 관련하여 내포하는 핵심적인 시사점은 경기도의 다양한 수출품목중에서 한미FTA체결에 따른 수출증대가 가능한 품목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 또한 단기, 중기, 장기의 시기별로 구분할 경우 시기별로 상이하게 도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사점은 기존의 지역 중심의 일괄적 수출지원체제에서 탈피하여, 주요수출품목 및 수출증대가 가능한 선택 품목 중심을 바탕으로 한 품목 중심형 수출촉진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한미FTA에 따른 수출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표13>과 같이 앞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수출증대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략 품목중심의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유망 품목 중심의 집중 수출마케팅을 실시하고, 품목중심의 전문 해외 전시회·박람회를 확대하며, 수출지원금 정책의 경우에도 지역중심의 지원금 정책 실시에서 품목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한미FTA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경기도의 수출촉진 우선 전략 품목

	주요수출품목	수출 증대 가능 품목
단기	플라스틱제품 원피제품 메리야스 편물 철강 원자로·보일러 전기기기·부품 차량 및 부품 광학기기·의료용기기	특수직물 방직용·공업용 섬유직물·섬유제품 메리야스 편물 차량 및 부품
중장기	자동차류 화물자동차류	자동차류 화물자동차류

### 2. 전략적 수출마케팅체제 구축

동업종의 개별 수출기업이 각기 해외마케팅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해외시장 조사에 중복적인 비용이 낭비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동일 유사업종 수출기업체들 간의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체 결성을 주선함으로써, 상호 정보 교환, 해당 업종의 해외시장 정보 입수

등에 대한 비용 공유를 유도해오고 있다. 컨소시움의 결성은 이러한 중목비용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기술협력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컨소시움 형태의 해외마케팅 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이용한 “허브-스포크”(Hub-Spoke) 개념을 통한 해외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한다. 허브지역에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의 허브-스포크(Hub-Spoke) 개념은 주로 물류나 금융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를 해외 수출마케팅 전략에 도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허브-스포크”형 컨소시움 전략 하에서는 특정 주력 수출품목 중심으로 마케팅 컨소시움을 형성하고 컨소시움내 허브 선도지역이 타지역의 해외마케팅 전략을 조율, 기획함으로써 일반적인 컨소시움 형태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허브-스포크형 컨소시움의 구성을 위해서는 수출 주력품목의 선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표13>에서 제시된 경기도의 수출촉진 우선 전략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중목별로 허브지역에 마케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교환,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마케팅 전략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 3.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수출진흥방안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시 앞에서 선정된 경기도의 수출유망 품목 산업과의 수직, 수평,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대미국 및 대세계 수출 증대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에서 분석된 수출현황 및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주요수출품목과 각 지역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산업과의 연관효과 고려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및 입지 선정을 통하여 구체적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및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4. 연구개발과 수출지원 금융 확대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 무역구조를 살펴볼 때, 산업내무역에 있어서 특히 경기도와 미국 간 무역의 수직적 구조의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대미 수출품목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인 수출지원시책으로써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출품목을 확대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간 경기도의 R&D는 전반적인 연구 인프라, 즉 연구 환경 구축 중심이었으나, 향후 특정 업종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지원 전략으로의 전환<sup>7)</sup>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와 연구 및 지적활동의 결과물 창출에 필요한 적극적 지원을 모색해야

7) “경기도 R&D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다. 또한 기존의 자금 대출과 같은 직접적 지원금융과 함께, 수출보험 이용 등이 수출지원 금융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해외투자금융, 수입금융이 전통적인 수출지원 금융의 형태이며, 이중 연불수출금융은 WTO 보조금 협약에서 허용되어, 수출입은행 주관하에 주요 수출지원금융으로 이용되었다. 수출보험은 최근 수출대상지역이 안전한 선진국 위주에서 이머징 마켓 등 국가 리스크를 수반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리스크 중 하나인 환위험 부담 역시 환변동보험의 이용을 통해 어느 정도 환위험 축소가 가능하나, 아직까지 정부의 인위적 환율시장 등에 의존하는 등 특히 중소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환율변동의 경우 상당수 수출기업들은 환변동의 최소화를 위해 환변동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환차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보험 이용을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환변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까지 당분간 수출보험료 지원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5. 지역 간 무역공동체 확립

한미 FTA 체결 이후 가장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해외마케팅 전략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국토가 넓고, 연방국가인 관계로 인해 주별로 경제시스템이나 산업구조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지역별로 경제적 이질성이 심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막연한 대미 수출에서 미국 특정지역을 겨냥한 수출 촉진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때 경기도 지역과 미국 내 주정부간의 무역협력체 결성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기존의 해외전시회나 통상촉진단 파견은 일회성 행사가 되기 쉬운 반면 경기도 지역과 미국 특정지역 간에 무역공동체 결성을 통한 교류는 보다 지속적으로 상호 교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I. 결 론

한·미 FTA는 상품·투자·서비스·경쟁·지적재산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로서, 협정체결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FTA의 파급효과와 경기도의 대미 수출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미FTA 이후 새로운 무역 판도 하에서의 수출진흥 방안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대미국 및 대세계 수출현황 및 수출경쟁력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미 FTA체결에 따른 경기도 수출산업의 영향과 수출증대가능 품목을 예상하였다. 특히 2000년에서 2006년의 기간에서 경기도의 품목별 수출입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경기도의 대세계 및 대미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미FTA에 따른 경기도의 각 지역별 주요수출품목의 변화는 산업별 특정

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속에서도 수출경쟁력지수분석을 통하여 주요수출품목의 영향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또한 한·미 FTA체결의 영향을 단기, 중기, 장기로 각각 구분하여, 주요품목과 수출경쟁력 기준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 각 시기별로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출품목의 특성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미 FTA체결에 따라 경기도의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전략품목중심의 새로운 수출지원시책과 마케팅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일괄적인 수출지원체제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유망 품목중심의 집중마케팅 실시, Hub-Spoke개념을 이용한 선택과 집중의 콘소시움 형태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와 연계한 수출진흥 방안강구하며,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수출지원금융의 효율적 지원과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과 미국의 주 단위 지역간의 직접적 교류확대를 위한 지역간 무역협력체 결성을 통한 지역간 협력체제의 강화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6), 『경기도 R&D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미FTA의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도준 (2008), “한미자유무역협정 섬유 및 의류산업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197-219.
- 박순찬 (2006), 『한미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 박순찬, 강문성 (2005), “한미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세계경제』 29-32.
- 산업연구원 (2006), 『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 외교통상부(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 이홍식, 이창수, 이경희 (2006),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효과』,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연구원.
- 이현식 (2008),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저축은행의 성장전략 모색”,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265-290.
- 정인교(2006) “한미FTA의 거시경제 및 대세계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243-278.
- Baldwin, Richard E. (2007) “The cause of regionalism” *The World Economy*, v.20, no7, 865-888.
- Baldwin, Richard E. and Roland Rieder (2007) “A Test of Endogenous Trade Bloc Formation Theory on EU dat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v.11, no.2, 77-112.

부록

<부록 1> 경기도의 품목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

HS	품목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1	산동물	-0.9636	-0.9151	-0.9760	-0.9771	-0.9562	-0.9114	-0.9609
02	육, 식용설육	-0.8473	-0.9359	-0.9098	-0.9700	-0.9824	-0.9924	-0.9867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8508	-0.8682	-0.9037	-0.9277	-0.9354	-0.9248	-0.9180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0.9420	-0.9522	-0.9452	-0.9448	-0.9638	-0.9552	-0.9684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0.5496	-0.4466	-0.5931	-0.7716	-0.7814	-0.8703	-0.7456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3263	-0.3762	-0.3129	-0.3379	-0.7099	-0.6498	-0.7435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5107	-0.5812	-0.6025	-0.7819	-0.8739	-0.9126	-0.9409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6930	-0.8455	-0.6927	-0.7420	-0.7417	-0.5611	-0.7004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0.8993	-0.8340	-0.6296	-0.5369	-0.4983	-0.6121	-0.6832
10	곡물	-0.9988	-0.9968	-0.9993	-0.9997	-0.9996	-0.9999	-0.9998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0.8827	-0.8517	-0.8999	-0.9077	-0.7677	-0.6352	-0.7967
12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절, 사료식물	-0.6792	-0.6286	-0.6960	-0.7021	-0.7242	-0.6989	-0.7404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0.3224	-0.2147	-0.3063	-0.2847	-0.3310	-0.4360	-0.4694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0.9936	-0.9929	-0.9845	-0.9891	-0.9835	-1.0000	-1.0000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0.9408	-0.9302	-0.9268	-0.9487	-0.9533	-0.9469	-0.9550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0.5533	-0.4236	-0.2104	-0.4278	-0.7320	-0.8091	-0.8478
17	당류와 설탕과자	0.2677	-0.0208	-0.1417	-0.3825	-0.5342	-0.6081	-0.4385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0.8412	-0.5831	-0.5717	-0.6331	-0.4807	-0.3949	-0.6120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0.1165	0.1815	0.2106	0.2493	0.2020	0.1222	0.0956

20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0.8839	-0.8427	-0.8656	-0.8903	-0.8636	-0.8085	-0.8061
21	각종 조제식료품	-0.5404	-0.5038	-0.3335	-0.2009	-0.1942	-0.0794	-0.1258
22	음료, 알코올, 식초	-0.8098	-0.8070	-0.8441	-0.8627	-0.7836	-0.8790	-0.8882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0.8844	-0.8760	-0.8833	-0.8905	-0.9207	-0.9330	-0.9388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0.9947	0.9687	0.9571	0.9408	0.8389	0.8026	0.5771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0.6142	-0.8225	-0.9366	-0.9038	-0.8888	-0.8783	-0.8695
26	광, 슬랙, 회	-0.8657	-0.7024	-0.7388	-0.6967	-0.7963	-0.8480	-0.580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악스	-0.9875	-0.9986	-0.9932	-0.9790	-0.9883	-0.9915	-0.9886
28	무기화합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0.5999	-0.6223	-0.6454	-0.6471	-0.6384	-0.7068	-0.5497
29	유기화합품	-0.4972	-0.4554	-0.7465	-0.6896	-0.6754	-0.6627	-0.6439
30	의료용품	-0.3893	-0.4087	-0.4028	-0.5036	-0.5412	-0.6240	-0.6848
31	비료	-0.8943	-0.9257	-0.9097	-0.9487	-0.9653	-0.9257	-0.9560
32	유연, 염색액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0.2653	-0.2080	-0.1215	-0.0545	-0.0024	0.0212	-0.0967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0.4645	-0.4322	-0.3377	-0.3265	0.2122	0.0155	0.0235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0.4763	-0.3656	-0.2836	-0.1622	-0.1510	-0.1465	-0.2089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우, 효소	-0.2085	-0.1486	-0.1744	-0.1701	-0.1661	-0.2555	-0.3086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0.5518	0.6085	0.5463	-0.2261	-0.1979	-0.4209	-0.6675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0.7255	-0.6070	-0.6471	-0.6793	-0.6482	-0.7388	-0.6589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0.8147	-0.7009	-0.7021	-0.7674	-0.7775	-0.7749	-0.7880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2608	0.2648	0.1254	0.1237	0.0974	0.0769	0.0887
40	고무와 그 제품	-0.3983	-0.3553	-0.3937	-0.4720	-0.5373	-0.4973	-0.4925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0.0555	-0.0948	-0.0536	-0.0150	0.0085	-0.0193	0.0112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0.6903	0.4346	0.0101	-0.3737	-0.4769	-0.5452	-0.5988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0.3658	-0.8490	-0.8565	-0.7185	-0.7463	-0.8166	-0.9131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0.8792	-0.8866	-0.9104	-0.8974	-0.8986	-0.8779	-0.9335
45	코르크와 그 제품	-1.0000	-0.9971	-1.0000	-0.9919	-0.9511	-0.9685	-0.9801
46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0.8618	-0.8664	-0.8975	-0.9043	-0.8790	-0.8386	-0.9392
47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0.9956	-0.9997	-0.9934	-0.9733	-0.9879	-0.9960	-0.9943
48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0.0407	0.0423	0.0575	0.0270	0.0494	0.0174	0.0029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0.6244	0.5648	0.5820	0.6406	0.6856	0.5037	0.3215
50	견	0.0805	0.1441	0.0866	0.1549	0.1579	0.1145	0.1125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0.3370	-0.4111	-0.4468	-0.5139	-0.1535	0.0676	-0.3562
52	면	-0.5924	-0.6327	-0.5700	-0.3876	-0.3571	-0.2994	-0.3587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0.2914	-0.3834	-0.1973	0.0517	-0.0118	-0.0706	-0.1100
54	인조장섬유	0.4517	0.5448	0.6069	0.6842	0.5650	0.5057	0.4376
55	인조단섬유	0.5285	0.3486	0.0670	0.0483	0.1072	0.0561	0.0591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크, 케이블과 그 제품	0.5933	0.5725	0.4683	0.5347	0.4641	0.5588	0.5011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0.7428	0.7599	0.6946	0.7560	0.5785	0.3519	0.2438
58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0.9298	0.9303	0.9341	0.8772	0.8628	0.8400	0.7769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0.8513	0.8132	0.7369	0.7821	0.7272	0.6848	0.7440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0.9506	0.9458	0.9428	0.9444	0.9537	0.9556	0.9461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0.7491	0.6509	0.5765	0.4788	0.5119	0.4606	0.2204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것은제외)	0.4837	0.0956	-0.0033	-0.1239	-0.2187	-0.4152	-0.5092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트, 중고 의류, 중고 방직용섬유제품, 남아	0.7856	0.7470	0.6286	0.5042	0.4136	0.2872	0.1869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0.5463	0.2956	0.0062	-0.1578	-0.2467	-0.3728	-0.3925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0.9496	0.8994	0.8725	0.8129	0.8203	0.7820	0.7117
66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0.0742	-0.0419	-0.3131	-0.6731	-0.7014	-0.8502	-0.7656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0.7024	0.5412	0.3485	0.1235	-0.0524	-0.0263	-0.0319
68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0.1059	-0.1812	-0.3935	-0.4319	-0.4204	-0.3752	-0.4167
69	도자제품	-0.8239	-0.8492	-0.8675	-0.8676	-0.8210	-0.8759	-0.8521
70	유리와 유리제품	-0.1935	-0.2189	-0.2321	-0.1949	-0.3167	-0.3270	-0.6913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품, 주화	-0.2120	-0.1636	-0.1399	-0.2755	-0.3655	-0.5663	-0.5003
72	철강	0.0019	-0.0519	-0.0761	-0.1660	-0.1606	-0.1928	-0.1407
73	철강의 제품	0.3619	0.3360	0.2427	0.2233	0.2345	0.1792	0.0984
74	동과 그 제품	-0.1728	-0.2046	-0.2311	-0.1940	-0.1791	-0.2433	-0.1641
75	니켈과 그 제품	-0.9541	-0.9526	-0.7896	-0.7835	-0.5769	-0.6543	-0.5219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0.1396	-0.0360	-0.0702	-0.1104	-0.1157	-0.1426	-0.2065
78	연과 그 제품	-0.7442	-0.8216	-0.8400	-0.7900	-0.7981	-0.7914	-0.8314
79	아연과 그 제품	-0.2004	-0.2446	-0.4700	-0.3624	0.0380	0.1476	0.0032
80	주석과 그 제품	-0.6585	-0.6175	-0.5101	-0.1229	0.3077	0.2989	-0.0821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0.7721	-0.7269	-0.7604	-0.8036	-0.7411	-0.5503	-0.6348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0.3103	0.3424	0.3810	0.4359	0.3960	0.4070	0.4689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0.4655	0.4140	0.3049	0.2838	0.3013	0.3015	0.2464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3004	0.3195	0.3602	0.2385	0.1292	0.0189	0.0657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0.0437	0.0650	0.0845	0.0765	0.1083	0.1954	0.1697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0.0640	0.4729	0.5613	0.6004	0.2021	-0.5446	-0.2647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8138	0.8656	0.7443	0.8252	0.8964	0.8830	0.8826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0.1084	-0.4874	0.4207	0.2811	0.0630	0.0565	-0.2307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0.9879	-0.9877	-0.9362	0.2297	0.6559	0.7229	-0.3957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5311	-0.4358	-0.5039	-0.5495	-0.5259	-0.5017	-0.1977
91	시계와 그 부분품	0.2011	0.3189	0.3529	0.2395	0.1847	0.1233	0.1169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7929	0.7692	0.7140	0.7595	0.7127	0.6487	0.6104
93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0465	0.5843	-0.3938	0.0351	0.0443	-0.3974	-0.0845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0.0378	-0.1233	-0.3139	-0.3460	-0.3837	-0.4977	-0.5921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1129	0.1586	0.0054	-0.0991	-0.0598	-0.2046	-0.2859
96	잡품	0.6706	0.6671	0.6615	0.6405	0.5850	0.4864	0.4124
97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0.2424	0.0062	-0.0895	-0.4289	-0.8089	0.8286	0.8799
99	기타	-1.0000	-1.0000	-1.0000	-1.0000	-0.9259	-1.0000	-1.0000

〈부록 2〉 경기도의 품목별 대미 무역특화지수(TSI)

HS	품목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1	산동물	-1.000	-0.998	-1.000	-0.995	-0.988	-0.987	-0.993
02	육, 식용설육	-1.000	-1.000	-1.000	-0.980	-0.948	-1.000	-1.000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923	-0.796	-0.931	-0.842	-0.787	-0.708	-0.583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0.727	-0.677	-0.395	-0.995	-0.934	-0.867	-0.939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0.942	-1.000	-1.000	-0.450	-0.555	-1.000	-1.000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924	0.760	0.830	0.629	-0.243	-0.097	0.393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730	-0.545	-0.538	-0.267	-0.569	-0.962	-0.874
08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727	-0.929	-0.764	-0.914	-0.924	-0.859	-0.832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0.127	-0.205	0.143	-0.922	-0.988	0.655	0.608
10	곡물	-0.998	-0.995	-0.997	-0.983	-0.993	-1.000	-1.000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0.603	-0.252	0.164	0.889	0.827	0.863	0.875
12	채유용 종자, 과일, 각종 종자, 과일, 공업용, 의약품식물, 짚, 사료식물	-0.862	-0.815	-0.874	-0.995	-0.973	-0.821	-0.803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0.619	-0.623	-0.819	-0.999	-0.993	-0.818	-0.637
14		-1.000	-1.000	-	-1.000	-	-	-1.000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0.970	-0.996	-0.992	-0.988	-0.978	-0.916	-0.966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0.009	0.472	0.590	0.369	0.144	0.008	-0.112
17	당류와 설탕과자	0.081	0.020	0.301	-0.313	-0.682	-0.776	-0.884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0.989	-0.968	-0.977	-0.980	-0.987	-0.978	-0.984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0.141	-0.054	0.410	0.401	0.640	0.581	0.471
20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0.943	-0.919	-0.941	-0.939	-0.930	-0.918	-0.867
21	각종 조제식료품	-0.601	-0.417	-0.144	0.210	0.368	0.334	0.375

22	음료, 알코올, 식초	-0.140	0.069	0.214	0.118	-0.214	-0.528	-0.655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0.820	-0.901	-0.740	-0.886	-0.858	-0.717	-0.730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000	1.000	0.968	0.899	1.000	1.000	1.000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0.972	-0.924	-0.878	-0.964	-0.925	-0.835	-0.927
26	광, 슬랙, 회	-0.991	-0.983	-1.000	-1.000	-1.000	-1.000	-1.000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0.999	-1.000	-0.996	-0.491	-0.826	-0.746	-0.491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0.667	-0.696	-0.894	-0.905	-0.888	-0.897	-0.821
29	유기화학품	-0.807	-0.688	-0.783	-0.704	-0.653	-0.473	-0.698
30	의약품	-0.907	-0.887	-0.857	-0.778	-0.745	-0.697	-0.803
31	비료	-1.000	-0.800	-1.000	-1.000	-1.000	-0.860	-0.973
32	유연, 염색액,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0.604	-0.608	-0.580	-0.622	-0.506	-0.234	-0.264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0.517	-0.408	-0.120	-0.262	-0.097	-0.121	-0.250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0.863	-0.621	-0.688	-0.646	-0.635	-0.743	-0.792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	-0.085	0.128	-0.055	-0.496	-0.374	-0.508	-0.409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1.000	1.000	0.263	0.671	0.909	-0.088	-0.350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0.831	-0.627	-0.713	-0.664	-0.689	-0.694	-0.615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0.761	-0.651	-0.768	-0.918	-0.868	-0.871	-0.887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005	0.029	0.052	0.141	0.084	0.042	-0.010
40	고무와 그 제품	-0.634	-0.553	-0.411	-0.387	-0.517	-0.411	-0.406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0.979	-0.982	-0.965	-0.969	-0.944	-0.953	-0.943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0.982	0.983	0.939	0.873	0.708	0.377	0.396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0.947	-0.936	-0.986	-0.985	-0.922	-1.000	-1.000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0.863	-0.790	-0.694	-0.635	-0.685	-0.878	-0.914
45	코르크와 그 제품	-1.000	-1.000	-1.000	-1.000	-1.000	-0.793	-1.000
46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0.271	0.333	-0.692	0.136	0.519	-0.286	1.000
47	목재펠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1.000	-1.000	-1.000	-0.996	-0.998	-1.000	-1.000
48	지와 판지, 제지용펠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0.378	-0.467	-0.255	-0.243	-0.278	-0.345	-0.266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0.830	0.731	0.706	0.799	0.803	0.766	0.715
50	견	0.971	0.978	0.962	0.973	0.993	0.993	0.996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0.865	0.833	0.858	0.972	0.958	0.973	0.638
52	면	-0.325	-0.833	-0.118	0.066	-0.105	-0.164	-0.669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0.235	-0.222	-0.234	0.868	1.000	1.000	1.000
54	인조장섬유	0.780	0.837	0.837	0.861	0.839	0.852	0.696
55	인조단섬유	0.136	0.047	0.145	0.009	0.201	0.012	-0.090
56	위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 케이블과 그 제품	-0.394	-0.100	-0.311	-0.444	-0.290	0.214	0.198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갈개	0.441	0.729	0.482	0.567	0.542	0.102	0.557
58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0.973	0.970	0.925	0.907	0.974	0.950	0.979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0.698	0.332	0.177	0.453	0.330	0.455	0.833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	0.988	0.988	0.960	0.968	0.938	0.942	0.952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0.992	0.991	0.978	0.988	0.986	0.974	0.955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것은제외)	0.993	0.972	0.953	0.928	0.949	0.845	0.715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컷트, 중고 의류, 중고 방직용섬유제품, 낱마	0.635	0.824	0.804	0.780	0.727	0.784	0.768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0.754	0.090	0.149	0.483	0.672	0.270	0.321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0.995	0.995	0.986	0.986	0.988	0.989	0.989
66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0.094	1.000	0.541	0.957	0.963	0.111	0.833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0.990	0.995	0.985	0.884	0.901	0.950	0.943
68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0.256	-0.138	-0.283	-0.319	-0.264	-0.112	0.021
69	도자제품	-0.875	-0.825	-0.691	-0.918	-0.844	-0.885	-0.890
70	유리와 유리제품	-0.359	-0.182	-0.331	-0.346	-0.248	-0.221	-0.256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품, 주화	-0.762	-0.786	-0.861	-0.813	-0.872	-0.902	-0.850
72	철강	0.192	-0.137	-0.482	-0.654	-0.326	-0.248	0.087
73	철강의 제품	0.644	0.693	0.659	0.635	0.719	0.679	0.583
74	동과 그 제품	-0.027	-0.393	-0.324	-0.356	-0.314	-0.331	-0.115
75	니켈과 그 제품	-0.997	-0.997	-0.983	-0.978	-0.974	-0.993	-0.97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0.176	0.192	0.405	0.203	0.231	0.087	0.072
78	연과 그 제품	-0.973	-0.753	-0.290	-0.170	-0.974	-0.904	-1.000
79	아연과 그 제품	0.493	0.666	-0.203	-0.421	0.274	0.195	0.407
80	주석과 그 제품	-0.988	-0.817	-0.969	-0.784	-0.405	-0.187	0.203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0.952	-0.913	-0.901	-0.736	-0.879	-0.786	-0.847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0.425	0.582	0.673	0.716	0.733	0.531	0.527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0.589	0.534	0.417	0.481	0.582	0.415	0.400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426	0.408	0.424	0.096	-0.105	-0.302	-0.337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127	0.003	-0.073	-0.125	-0.115	-0.044	-0.099

